

서울고등법원 2022. 4. 21 선고 2021나202866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1.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2. 파산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3. 파산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심

담당변호사 박경호

피고, 항소인 1.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임병일, 조한준

2.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신

담당변호사 최명호

변 론 종 결 2022. 3. 24.

판 결 선 고 2022. 4. 21.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19가합538321 판결

주 문

1.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변경한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F 주식회사의 피고 E에 대한 2015. 11. 10.자 2,000,000,000원의 변제행위를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364,000,000원,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1,584,000,000원,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5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원고들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와 피고 E에 대한 청구취지주문 제1의 가, 나항과 같다.

나. 원고들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제1, 2 예비적 청구취지

1) 제1 예비적으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과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 사이에 2015. 11. 10. 체결된 2,0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제2 예비적으로 피고들 사이에 2015. 11. 10. 체결된 2,0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중 ‘금전지급행위’ 부분을 변제행위 또는 증여계약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피고 D에 대한 제2 선택적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제1 선택적 청구를 제1 예비적 청구로, 제3 선택적 청구를 제2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다음 제2항에 피고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변경함에 따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은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제1 선택적 청구를 기각함과 아울러 제2 선택적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변경함에 따라 이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제1,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게 되므로, 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이다.]

1) 제1심판결 중 7면 아래에서 1행의 “제1 선택적 청구” 부분 ⇨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2) 제1심판결 중 8면 10행의 “제2 선택적 청구” 부분

⇨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주장”

3) 제1심판결 중 8면 아래에서 4행의 “제3 선택적 청구” 부분

⇨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4) 제1심판결 중 9면 5행의 “제1, 2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

⇨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5) 제1심판결 중 10면 4행의 “(제1 선택적 청구)” 부분 ⇨ 삭제

6) 제1심판결 중 11면 아래에서 2, 3행 부분 ⇨ 삭제

7) 제1심판결 중 11면 아래에서 1행부터 12면 1행까지의 “(제2 선택적 청구)” 부분 ⇨ 삭제

8) 제1심판결 중 15면 아래에서 5, 6행의 “이와 같이 원고들의 제2 선택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제3 선택적 청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부분

⇨ “이와 같이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는 이상,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제1,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9) 제1심판결 중 15면 아래에서 1~4행 부분(제1심판결의 이유 제4항 ‘결론’)

⇒ 삭제

나. 잘못된 기재를 바로잡거나 사실인정을 일부 변경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판결 중 11면 아래에서 6, 7행의 “피고 E게” 부분

⇒ “피고 E에게”

2) 제1심판결 중 14면 10, 11행의 “피고 D은 피고 E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피고 D의 임직원도 피고 E의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부분

⇒ “피고 E는 피고 D과 F, P 주식회사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신의 친인척을 그 임원으로 선임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므로[갑21호증 중 5면, 다만 2018. 6. 24.경 이전부터 2019. 4.

22.경까지 피고 D의 대표이사였던 Q는 피고 E의 친인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갑3호증, 갑14호증 중 3면, 을가2 호증의 1, 2)],”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척기간 부분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2015. 11. 10.경 F의 피고 E에 대한 변제행위(이하 ‘이 사건 변제행위’라 한다)가 있기 전부터 L조합의 자금 흐름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2016. 1. 27.경 L조합에게 자금 집행의 내역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당시 이미 취소원인을 알았거나, 적어도 2018. 6. 12.자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서’에 첨부된 자료가 발급된 2018. 4.경에는 그러한 취소원인을 알게 되었는에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한편 예금보험공사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담당직원이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면, 이로써 예금보험공사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서 대리인을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에 관하여 직접 조사하여 법적 조치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F에 대한 대출금 내지 연대보증채무금에서 L조합의 2015. 6. 29.자 지급액 36,890,000,000원을 변제충당한 나머지 금액의 채권(이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라 한다)을 가지는 저축은행들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인데(갑1호증의 1, 2, 3), 그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들의 직원은 2018. 6. 12.경 외부의 제보자로부터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서’를 제출받고서 F의 피고 E에 대한 이 사건 변제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F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갑17, 20~23호증), 이에 원고들은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인 2019. 6. 10. 이 사건 변제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원고 파산자 A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2016. 1. 28. L조합에게 F과 피고 E에 대하여 자금을 집행한 내역의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바 있으나(을나1호증), 이후 L조합으로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공받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갑11호증, 을10호증, 을나3, 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2018. 6. 12.경 이전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F의 사해행위, 사해의사 및 피고들의 선의 부분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가) L조합은 F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일부 금액을 F으로부터 변제수령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I, J,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원고 파산자 A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및 원고 파산자 B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도 지급을 하였으므로, F은 이 사건 변제행위 당시인 2015. 11. 10.경 L조합에 대하여 54,000,000,000원의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F은 무자력이 아니어서 F의 피고 E에 대한 이 사건 변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한편 이 사건 변제행위는 F의 피고 E에 대한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라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나아가 F으로서 원고들이 F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제행위 당시 사해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들 역시 이 사건 변제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그러나 제1심의 변론 결과에 이 법원이 추가로 심리한 내용을 보태어 보아도, 이 사건 변제행위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라도, F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E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특히 F과 L조합은 2015. 4. 20.경 L조합이 미지급 매매대금 54,000,000,000원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압류 및 가압류등기를 말소하는 데 사용하되, 남은 금액은 F에게 지급하고, 원고들로부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지급과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한 동의를 받을 경우 원고들과 F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을3호증 중 43, 44면).

그러나 L조합은 위 2015. 4. 20.자 합의 이후인 2015. 5. 6.경부터 2015. 7. 10.경까지 매매대금으로 53,952,066,000원을 지급하였고(그 지급 명목이 근저당권 말소, 가압류 해지 또는

각종 채납 세금 내지 공과금 등이므로, L조합은 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5. 9. 7.경부터 2015. 11. 10.경까지 지연보상비 명목으로 이 사건 변제행위에 제공된 2,000,000,000원을 포함하여 3,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갑15호증). 따라서 이 사건 변제행위 당시 F의 L조합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은 대부분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F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피고들은, F이 최근에 R을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F의 R에 대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가1호증)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로 인하여 F의 소극재산이 다소 감소하더라도, F이 원고들에 대한 채무액을 초과하는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 F의 채무초과상태를 부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F이 위 2015. 4. 20.자 합의에 관하여 원고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거나 원고들이 F이나 L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채권을 변제받을 경우 이 사건 피보전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F이 원고들의 F을 상대로 한 소송이 취하될 것으로 예상하였다거나 이 사건 변제행위 당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 밖에 피고들은, 피고 E가 F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급여 561,643,600원과 이에 대한 2012. 11. 14.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서(을나2호증), 그 범위 내에서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사건 변제행위를 통하여 피고 E의 F에 대한 급여와 그 지연손해금 채권이 아니라 사업권 양도대금 중 2,000,000,000원의 채권이 변제되었고(갑11, 14호증, 을2, 9, 10호증), 그로 인하여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 E가 급여 채권에 기하여 F의 재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거나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변제행위가 이루어진 2015. 11. 10. 무렵에 그 재산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다.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부분

1)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 D은 피고 E로부터 2,0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변제행위를 통하여 그 차용금으로 2,0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가, 이후 피고 E에게 그 이자를 포함하여 2,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D이 원고들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면 피고 E에 대한 채무를 2중으로 변제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

나) 판단

그러나 피고 D은 악의의 전득자로서 원고들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효력은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에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치는 것이므로, 전득자인 피고 D이 채권자인 원고들이 아니라 수익자인 피고 E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해서 이로써 원고들에 대한 가액배상금의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는 없다(수익자가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D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설령 이 사건 변제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들이 전득자인 피고 D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E에 대하여 추가적인 가액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 E는 F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에 관한 확정판결까지 있는데도, 원고들이 피고 E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은 중복적인 소송에 해당한다.

나) 판단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원물을 회수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반환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채권자에 대한 원물반환은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채권자는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나아가 수익자와 전득자 모두에게 가액배상을 명할 경우에는 수익자와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가액배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할 것을 명하게 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참조).

또한 피고 E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원고들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와 별도로 피고 E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해서 원고들이 피고 E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중복소송에 해당한다거나 피고 E가 원고들에 대한 가액배상금의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원고들이 가액배상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이를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경우 이에 따라 피고 E의 연대보증채무가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소멸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 E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지만,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변경함에 따라 변경 후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변경한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정윤희, 판사 최현종, 판사 방웅환